

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규정

(제정 2006. 8. 9.)

(제명변경 2020. 9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「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외국인 전임교원(이하 “외국인 교원” 이라 한다)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조(자격) 외국인 교원은 본교 계약에 의해 임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외국어 또는 전공 분야의 강의 및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자
2. 외국어카페 운영에 따른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자
3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

제3조(임용시기) 외국인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 한다.

제4조(자격기준) 외국인 교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 교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 연수를 통산하여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<개정 2013.12.26.>
2.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적합한 입국사증을 발급 받은 자
3. 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제5조(임용절차) ① 외국인 교원은 특별채용으로 임용한다.

② 외국인 교원의 임용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1. 외국인 교원 활용계획서 1부.
2. 학과(전공) 또는 관련 부서 회의록 1부.
3.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각 1부.
4. 학력 증명서 각 1부.
5. 학위증 사본 1부.
6.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.
7.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.
8. 그 밖에 임용에 관련된 서류

③ 외국인 교원은 임무에 적합한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, 입국 후에는 관련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,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외국인 교원은 본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 없이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6조(임용계약) ①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1. 근무기간

최초 2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
2. 급여

「교원 보수지급 기준」에 따라 정한다. <개정 2023.5.1.>

3. 근무조건

4. 업적 및 성과

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

6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규정한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, 재계약 조건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, 계약임용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재계약) ①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외국인 교원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소속 학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3.2.22>

② 외국인 교원이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(계약만료 당해학기 제외)중 강좌평가결과가 전임교원 평균 백분위 상위 50%이내 또는 평균 3.87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의 강좌평가결과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
③ 국제영재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평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복무) 외국인 교원은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복무하되,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교직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책임시간) ① 외국인 교원의 책임시간은 「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」에 따른다.

②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「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」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

③ 국제영재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책임시간 및 초과강의료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세칙 시행 이전에 계약 임용된 비정년계열 외국인 교원은 이 세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세칙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세칙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세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